



2023 성남 특수교육 기본계획



2023. 2.



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
GYEONGGIDO SEONGNAM OFFICE OF EDUCATION

2023 학생이 행복한 성남 특수교육

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성남특수교육 실현

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
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
특수학교(급) 확대를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

추진 과제

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실화

-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
-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
- 특수학교(급) 다양화
-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

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

-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
-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
-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
- 장애학생 인권 강화

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

-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
-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
- 개별화교육계획 수립·운영
- 순회교육 지원 강화
- 장애학생 문화예술·체육 활동 지원
-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
- 방과후교육·돌봄 지원체계 강화
-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
- 장애학생 안전 강화
- 지역사회 연계 진로·직업교육 다양화

I.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

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

1-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

가.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제 구축

- 성남시청, 성남시 의료원, 통합보육정보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

나. 특수교육 의무·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

-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, 부모교육 및 상담,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·무상교육 적극 홍보
- 특수교육대상자 조기진단과 배치를 위한 유치원·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

다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강화

-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·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리검사전문가, 특수교사, 의사, 치료사, 사회복지사 등으로 진단·평가팀 구성·운영
- 장애유형별 진단·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

1-2 장애영유아 대상 영아학급 운영

가. 교육 지원 내용

- 특수교육대상 선정·배치된 영아 대상(8명, 2학급 운영)
-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 작성

나. 교육 지원 방법

-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또는 가정순회를 통한 일대일 또는 소그룹 운영
- 교육지원 방법: 주 2회 가정방문, 주 1회 가정통신문, 가정연계학습 등
- 감염병으로 인한 대면 수업이 불가 시 온라인수업,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

다.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지원

- 특수교육대상 영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 안내 통신문 발송
- 방문, 전화, 메일, 문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학부모 상담 시행

가.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

-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계획 수립 운영
- 특수교육대상영아를 위한 순회학급 운영
 - 장애영유아 학생 대상 순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개별화교육계획 운영
 - 특수교육대상 영아 지원을 위한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마련
-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
 - 중도·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강화
 - ※ 물리치료, 작업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우선 지원
 - 보조공학기기 대여
 - 가족상담, 양육상담, 보호자 교육, 가족지원 프로그램 수립·운영
- 교사지원을 위한 협력적 수업(보결수업) 제도 운영

나. 경기도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거점센터 운영

- 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
 - 경기도 내 특수교사 대상 보완대체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수
- 지체중복장애 보조공학기기 담당자 네트워크 운영
 - 대상: 25개 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담당자
 - 역할: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보조공학기기 컨설팅

다.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역량강화 지원

- 학부모 연수 운영 : 입학설명회/ 장애아동 양육 역량강화/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가족 역할 /학생 맞춤형 컨설팅 등
-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
 - 내용: 가족(자녀-부모-형제자매) 사진 촬영 지원
 - /특수교육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부부 중심 양육상담 프로그램 운영

라.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

- 지역 내 관공서, 복지관, 병원, Wee 센터, 문화재단, 복지재단, 직업 관련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활용 강화
- 주민센터, 시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를 통해 복지 프로그램 활용
- 인근 대학과의 연계 및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인력 확보
- Wee센터, 기초학습클리닉 등 교육지원청 내 업무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

3 특수학교(급) 다양화

가.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배치, 급당 적정 인원 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

-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및 거주지 인근 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(초·중·고)에 특수학급 신·증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

나. 복합 특수학급 구축·운영 여건 마련

- 중도·중복장애, 시·청각장애 등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여건 마련
- 예술, 체육, 진로·직업 등 특정 분야 교육수요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고려한 특성화된 특수학급 설치 홍보
 - ※ 복합 특수학급이란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전일제 형태의 중도·중복 장애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급

라. 특수학교 증설 추진

- 특수학교 배치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경영과 배치 팀과 협업, 성남 내 공립특수학교 학급 증설 추진

다. 신설 특수학급 대상 지원단 운영

- 내용: 신설학급 환경 구성,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, 예산 계획 수립 지원

4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

가. 성남 특수교육 연구회 조직·운영

- 특수교육 분야의 주요 교육정책과 등 교원의 자발적인 학습 활동 지원
- 교육연구회의 성과나눔 연합활동을 통한 교육연구회 '공유' 체제 확립
- 관내 6~8개의 연구회 조직 및 예산 집행 지원
- 성남 특수교육 연구회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실적 학점화 지원

나. 특수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

- 유치2개, 초등6개, 중등3개, 고등3개 권역별 네트워크 조직
- 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컨설팅
- 특수학급 운영 관련 현안 관련 공동 해결방안 모색
- 수석교사 연계 멘토링제를 통한 신규 및 저경력교사 지원
 - 수석교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수업 장학 지원
 - 신규교사, 저경력 교사와 경력교사의 정기적인 멘토링(수업 및 학급운영) 지원

다.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

- 유, 초, 중, 고 학교급별 특수학급 교사 요구를 반영한 연수 운영
-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운영
 - 중도·중복장애학생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대상 AAC 연수 실시
 -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
 -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실천 사례 나눔
 - 특수교육 문화예술 수업 역량강화 연수

라.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

-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
- 특수교사 심리적 지지 및 치유를 위한 전문가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
- 특수교육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

II.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

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

가.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

-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
 -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권장
 -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, 정기상담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·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
 -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학생의 조기 발견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 제공
 -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조정(학급정원 1~3명 감축 가능)
- 유치원 통합교육을 위한 간담회 운영
 - 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원 원장
 - 내용: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및 통합교육 지원 사례 나눔

나.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

-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을 위한 '통합교육지원단' 운영
 - 목적: 통합교육 현장의 긴급 사례 관리
 - 내용: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
 - 방법: 현장 조사 및 지원 협의회 운영
 - 지원단 구성: 초등교육지원과장, 특수교육 담당장학사,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,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, 사례별 전문가
- 지체중복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
 - 목적: 경기도 지체중복 장애학생 지원
 - 내용: 보안대체의사소통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스템 구축
 - 방법: 교원 연수 및 거점 학습공동체 운영,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

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

가. 일반학교 교장·교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

- 장애인식개선 및 특수교육 역량 강화 관리자 연수 운영
 - 일시: 2023. 6월 중
 - 대상: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 교장, 교감
 - 내용: 장애인식 개선 및 특수교육 역량 강화(집합연수)
 - ※ 모든학교 교(원)장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의무

나.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

- 통합학급 운영 연수
 - 대상: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학급 담당교사(건강장애 학생 포함)
 - 내용: 초, 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연수
-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통합교육 관련 연수 이수 강화
 - 통합학급 담당교사 통합교육 연수 안내
 - 특수교육 직무연수(집합연수, 원격연수) 과정 안내
 - ※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(집합, 원격)
 - ※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직무연수(60시간) 이상 권장
- 통합교육을 위한 예술(음악, 미술), 체육교과 지도 연수
 - 초, 중, 고 예술(음악, 미술) 체육교과 담당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
 -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협력적 수업을 위한 문화예술 역량강화 연수

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

가.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

- 특수학급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·초·중·고 의무교육 실시
- 유·초·중·고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계획 의무 반영

- 학교교육과정 반영 연간 2시간 이상 확보,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수업, 교내외 봉사활동 등 활용
 - 교육부 주관 '장애인의 날' 특별기획방송*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
 - ※ 특별기획방송: 대한민국 1교시(KBS라디오), 장애이해교육 드라마(KBS2TV) 등
 -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백일장,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 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
 - 장애 체험 활동,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활용
-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(장애이해)교육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 권장
 - ※ 2023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

나. 교육지원청,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

- 교육지원청 소속 모든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연수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(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16조 제2항)
-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연수
 - 연수 실시 후 30일 이내 ‘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’ 입력 제출 (<http://www.able-edu.or.kr>)

4 장애인권 강화

가. 장애학생 폭력예방 및 보호 강화

- 장애학생 폭력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홍보 및 상시 보호체계 운영
 - 특수교육대상학생 성폭력, 학교폭력(경찰청117, 112, 학교별 학교폭력전단기구,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부서, 경기도교육청 성폭력전담신고센터), 차별 행위 등 인권침해사안(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)을 누구나 쉽게 제보·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,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

나. ‘장애학생 인권지원단’ 운영

- 구성: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

- 역할: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(연 2회로 확대), 장애학생 학교폭력 (성폭력) 사안 발생 시 가.피해 학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지원 실시
- 매월 1회 이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방문 인권보호 지원 실시

다.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 성교육 강화

- 초·중·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
- 특수학교(급)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
-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·강화
 -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·강화

※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예시

-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
-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 지원 사항
-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‘포상’ 조항 신설 등

- 특수학교(급)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(통합학급 포함 20시간 확보)

라. 특수교사 대상 성교육 심화연수 실시

- 성인기 자기결정력 준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워크숍 실시
- 더봄 학생 및 위기가정을 위한 개별 맞춤형 양육코칭 및 상담 지원
- 학교대상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관연계 및 강사인력풀 구성

Ⅲ.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

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

가.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

-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* 구축 및 기기** 확충 지원
 - * 교육부 연계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, AI활용 교실 등
 - ** AI 학습보조 로봇, 실감형 콘텐츠 체험기기, AI형 스마트 기기 등 에듀테크 기기
-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안내
 - ※ ‘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(www.nise.go.kr)-수업지원자료’ 탑재자료 활용
- 국립특수교육원 연계)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* 안내
 - * ▲특수교육 메타버스, 실감형 콘텐츠 활용하기 ▲SW·AI교육 수업하기 ▲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만들기 ▲AI 활용 특수교육 수업하기 ▲AI형 에듀테크 활용하기 등

나.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홍보

- (국립특수교육원 연계)온·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* 안내('22~)
 - * 실시간 음성 인식·자막 지원, 개별 화상수업 등 기능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
- 키세넷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정보 제공 및 공유

가. 학교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

- 학교의 특성 학생·교사·학부모의 요구 필요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은 교과(군)별 30%범위, 공통교육과정은 20%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
-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정교과(체육, 예술, 진로와 직업)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
 - 교과군별 50%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교과로 편성하되, 체육, 예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
- 중도·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원(특수학교)
 - 중도·중복장애학생 배치 특수학교는 교과(군)별 50% 범위 내에서 교과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

나.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원 강화

-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편제와 시간 배당 적용 준수
-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포함
-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운영 시 특수교사 참여 확대
-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관련 요청장학 실행

다. 2022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

-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*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평가 지원 개발 자료 안내
 - * 적용 일정: ('24) 유치원, 초 1~2 → ('25) 초 3~4, 중·고 1 → ('26) 초 5~6, 중·고 2 → ('27) 중·고 3
-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원단 활용 교원 연수

3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·운영

가.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운영

-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, 특수교육교원, 일반교육교원,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
 - IEP 작성 시 일반교육교원,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
-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, 교육목표, 교육내용, 교육방법,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
 - ※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
-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결과 통합학급교사,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
- 특수학급 미설치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과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(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교원 지정)
-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,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·활용
- 특수교육 보조인력 (특수교육보조원, 사회복지무원, 자원봉사자) 활용 확대
-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
 - ※ 개별화교육 가이드북(국립특수교육원), 개별화교육 Q&A 자료집 활용(특수교육과)

나.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

-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·배치 시 개별화 교육 계획 법적 요건 안내 철저
- 개별화교육 법적요건 이행 및 수립 여부 점검
 -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,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운영,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,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송부
-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·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안내 *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기능개선 사항 안내 ('23년 하반기 예정)

가. 순회교육 지원 범위

-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 -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교사 순회교육 지원 철저
 - ※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권장
- 순회학급 순회교육: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·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(영아포함) 순회교육 지원
 -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 등
- 특수학급 설치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희망 시 지원 가능
-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
 - ※ 의료기관에 설치한 학급(이하 '병원학교') 특수교사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

나.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

-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,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및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
 - 순회학급 교육과정 점검 실시
- 순회교육 담당교사 대상 중증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실시

가. 특수학교(급) 문화예술연계 수업 교원 역량 강화

- 일시: 2023. 4월~ 12월
- 대상: 유, 초, 중학교 과정 특수학교(급) 24교
- 내용
 - 국악&무용, 연극&영상, 음악&무용, 무용&미술 융합 수업
 - 특수교사와 예술강사의 협력수업을 통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

나.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운영

- 목적: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예술교육 경험 확대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
- 장애학생 1인 1악기 교육 지원
- 성남 특수교육대상학생 유니즌오케스트라 운영
 - 새싹단원, 꿈나무 단원, 오케스트라 단원 3과정으로 운영
 - 연간 1회 정기 연주회 실시
 - * 내용: 장애학생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
 - 분기별 1회 찾아가는 연주회를 통한 통합학급 장애인식개선

다.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

- 목적: 지역사회 유관기관,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동 지원
 - 체육강사 연계 수업 담당 강사 및 교사 연수 및 사례 나눔을 통한 질 관리
-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 연계 체육 수업 강사 파견 사업 지원
 - 관내 초, 중, 고등학교 14개 학급 대상 지원
- 꿈e든카드 바우처 수행기관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확대

6-1 중도·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

가. 중도·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

- 시설 접근성,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,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
 -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(심리안정실 등) 구축
 -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
- ※ 중도·중복장애학생 배치 전일제 특수학급은 학생 수 하향 조정(급당 4명 배치)

나. 중도·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원

- 특수학교 중도·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교과(군)별 50%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·운영
- 중도·중복장애 학생의 특성,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·운영
- 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시, 체험활동, 방과후학교, 진로·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다. 특별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

-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과- 협력 의료기관- 학교 협력체제 구축 지원
- 관내 특별건강관리 지원 필요학생 수요 조사 후 맞춤형 대책 마련

「특별건강관리지원」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래흡인(석션), 경관 영양 등과 같이 호흡, 섭식 등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함.

6-2. 건강장애학생 지원

가.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

-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
 - 꿈사랑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에 원격수업 위탁 운영
 - 특수교육대상자(건강장애) 선정·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진단서 등 확인
-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허가한 경우 선(先) 교육지원 가능
-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 및 홍보 강화
 - 병원학교 안내 및 관련 자료 등이 탑재,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,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시 활용
- 보건실,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자료(세 가지 이야기 등) 상시 비치
-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및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
 -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/또래를 포함 운영
 - ※ (예시) 학생 심리.상담 지원 프로그램, 학생 학습지원, 담임교사 연수,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, 학급 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
- 「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」제정에 따른 학교장 책무 강화

나.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

※ 2023년 「학교생활기록 기재 요령」 사항을 반드시 확인

- (학적)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
- (출결)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 포함
 -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, 중·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
- (평가) 수행평가,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
6-3. 행동중재 지원

※ ▲특수교육법 제2조(정의) 2, 제28조(관련서비스), ▲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(재활 및 발달 지원)

가.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

- 행동지원 전문가, 특수교사, 통합교사, 경찰서 등 지역유관기관 담당자와 연계하는 긍정적 행동지원단 구성
-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(급)에 행동중재 방법 및 컨설팅 제공

나.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

- 학교 구성원과 긍정적 행동지원단 정기 모임 지원
-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환경 구축 지원
-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
- 학교대상 긍정훈육, 회복적 생활교육 등의 예방적 차원의 평화로운 통합학급 운영 지원

다. 특수교육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

- 개별지원 학생 가족, 교사 대상 행동지원 정기 연수 실시
- 교사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및 사례연구
- 장애학생 행동지원, 긍정훈육 역량강화 지원

7 방과후 교육·돌봄 지원체계 강화

가. 특수교육방과후교실 운영 지원

-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
- 특수교육방과후교실, 방과후 자유수강권(꿈e든카드) 운영 및 사용처 확대
- 특수교육방과후교실 운영교 대상 운영 점검 실시(2023. 7월 예정)
- 특수교육방과후 바우처 수행기관 점검 실시(2023. 2월, 8월 예정)

나.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지원

- 목적: 맞벌이, 저소득층,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및 교육 지원
- 대상: 관내 특수학급 4개학급/ 특수학교 7개학급 종일반 운영
- 내용: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점검(2023. 1월, 8월 예정)

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

8-1. 특수교육 지원 인력 운영

가. 특수교육지도사 운영·관리 강화

- 특수교육지도사가 필요한 중도·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
- 특수교육지도사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
-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학생의 졸업, 전학 등으로 지원 수요가 없어질 경우, 학교 재배치 등 특수교육지도사 안정적 근로 조건 확보 노력
- 특수교육지도사 업무평가(근무성적평정 등 연2회) 철저
- 특수교육지도사 순환근무제 활성화

< (참고)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>

- ▶ (근거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」제5조(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) ①항
 - ☞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, 신변처리, 급식, 교내외 활동,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
 - ▶ (주요업무)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역할을 담당
- (교수·학습활동 지원)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, 이동 지원,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,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
- (개인 욕구 보조)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, 보조기 착용, 의복 착·탈의,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
- (학교 적응 지원)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,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, 행동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

나. 특수교육지도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

- 일시: 202. 8월중/ 2023. 2.월 중(총 12시간 운영)
- 대상: 특수학교(급) 특수교육지도사

- 내용: 장애학생 인권보호, 특수교육 전문성, 힐링 연수

다.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

- 사회복지요원의 전공 및 적성,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,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
- 사회복지요원 장애이해·인권 교육 실시
 - 배치 전 교육지원청에서 장애이해·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 실시
 - 각급 학교에서는 기배치 사회복지요원 대상, 연 2회 이상 장애이해·인권교육 실시
- 사회복지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운영
 - 일시: 2023. 3월 중 실시/ 8월중 집합연수 1회 실시 예정
 - 대상: 특수학교(급) 사회복지요원
 - 내용: 장애학생 인권보호,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의 실제, 힐링 연수

8-2.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강화

가. 장애인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강화

- 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’ 구축
 - 유치원 및 학교 신·증축 시 ‘장애물 없는 환경(BF)’인증 의무 준수
 - ※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(‘15.7.시행)
-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(승강기 포함) 확충

나.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미설치 승강기 설치 지원

- 모든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향상 노력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설치 유도
-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
 -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상향(설치율 저조 항목 중점 시설)
 - 농아인 안전체계구축을 위한 유도 및 안내설비, 경보 및 피난 설비 강화
- 각급학교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승강기 설치 및 예산 확보 계획 수립
 -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단기 설치가능 시설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설치

권장(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)

- 1천만원 미만 소요되는 시설은 학교별 연차적 예산 확보 및 설치 추진
- 승강기 미설치교 중 연도 내 설치 가능한 학교 전면 확대 지원

※ 설치대상교 선정 시 공사가능여부, 휠체어 이용 학생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

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설(의무시설 및 권장시설)

편의 시설 급별	매개시설			내부시설			위생시설			안내시설			기타시설	
	주 출입구 접근로	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	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	출입구 (문)	복도	계단 또는 승강기	대변기	소변기	세면대	점자 블록	유도 및 안내 설비	경보 및 피난 설비	관람석 / 열람석	접수대 / 작업대
초중고 특수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권장	의무	의무	의무	권장	권장
유치원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권장					

※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(편의시설의 종류)

8-3. 특수교육 행·재정 지원 강화

가. 특수학급 운영 관련 지원

- 특수학급 운영비: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확보/ 유치원 1학급당 3,000천원, 초·중·고(전공과 포함) 1학급당 2,000천원(목적사업비) ※ 「202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 준용 철저
- 특수학급 급당 경비: 특수학급당경비는 특수학급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특수학급 운영 및 학습에 우선 편성
- 특수학교(급) 순회학급 여비: 가정·시설 등에 설치된 순회학급의 교육을 위한 교사 여비 지원
 - 순회교육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에 한 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
 - 1학급당 4,000천원 범위 내에서 2023년도 순회학급 수업일수만큼 지원
- ※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지침 준용
- 신(중)설 특수학교(급) 교재교구비: 특수교육의 내실화 도모 및 교수·학습 여건 조성

- 지원단가

(단위:천원)

구분	신/증설 통일	비고
시설공사 필요교	28,000	
시설공사 불필요교	20,000	
별도교실 확보 불필요교(순회학급) 및 특수학교	10,000	
3년 이내 감축 후 재편성 학교	0	

- 특수학교(급) 시설·설비 확충 지원: 특수학급 시설·설비, 교재·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「학교운영비」에 반드시 우선 편성·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·집행 지침에 포함
 -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(66㎡ 이상 교실) 확보
 -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, 세면장·화장실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실 위치 선정

나.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

- 목적: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도모
-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
 - ※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입차량 차량 및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연수 실시
-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: 원활한 통학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
 -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(유·초) 또는 최소 2km이상(중·고·전공과) 통학하는 경우
 - 통학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km이상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
 - 중증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또는 자가 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등
 - 버스요금 기준 유·초·중·고·전공과 급별 1일 왕복요금 지급

다.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 지원

- 목적: 특수교육대상학생 복지 지원으로 학습기회 확대,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

-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
 -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고 있는 만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
 - 공립유치원 우유대금은 실비 지급,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차액분 지급
-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(1일형) 및 주제별 체험학습비(숙박형)지원
 -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,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
 -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에서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
 - 현장체험학습비는 참여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5만원 내에서 지원
 - 주제별 체험학습비는 기준금액(10~20만원) 초과분 학교자체 지원 방안 강구

9

장애학생 안전 강화

가. 특수교육대상학생 등·하교 안전 계획 수립·운영

-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·하교 안전 계획 수립·운영
 - ※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·운영,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계획 등 포함
- 특수교육대상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·정차 단속, 통학 환경 개선

나. 특수학교(급)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

- 교육현장 특성*을 고려한 상황별(교통, 화재, 재난) 안전교육 수시 실시
 - *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및 정도, 주변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요소 등
-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

다.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

-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
-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·관리 계획 수립
- 특수학교(급)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,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

가. 진로체험지원전산망 ‘꿈길’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지원

-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발굴한 체험처를 ‘꿈길’에 등록하고, 장애맞춤 체험처 지속적으로 발굴·등록
- 꿈길, 학교 내 자원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장애인표준사업장,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

나.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지원

-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·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
- 학교기업(성은학교), 통합형직업교육 거점학교(성남테크노과학고) 운영 지원
-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(대상 학생의 인권, 안전 강화)

다. 성남교육청 내 꿈Job카페 현장형 직업체험 지원

- 대상: 고등학교 3학년, 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
- 내용: 바리스타교육, 판매, 매장 관리 체험

라. 각급학교 내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 지도 및 추수지도 지원

- 대상: 관내 각급학교 내 일자리 참여자 30명
- 내용: 직무 추수지도 및 관련 종사자 협력을 위한 상담 지원

마. 특수학교 진로전담 교사 협업 관계 구축

- 성은학교- 성남혜은학교 진로전담 교사 정기적 협의회 지원

바. 특수교사 고교학점제 실행 역량 강화

- 성은학교(고교학점제 연구학교) 중심 교원 역량 강화
-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

V. 예산 사용 계획

특수교육		(단위:천원)
특수교육운영		50,563
1. 특수교육운영위원회운영		9,201
2.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		22,362
가. 특수교육학부모연수		1,336
나. 특수학교(급)교육과정연수		5,209
다. 특수교육연구회운영비		8,400
라. 통합교육지원연수		7,417
3.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		19,000
가.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		19,000
1) 학교시설이용료	1,100,000원×10월×1교=	11,000
2) 물품구입비	1,000,000원×8개=	8,000

성남형 교육		(단위:천원)
성남형 특수교육문화예술		6,000
1. 특수교원 역량강화		4,000
2. 성과나눔의 날 운영		2,000

* 그 외 예산은 성남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의거함(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/ 장애인권지원단 운영비/ 중도중복장애 거점센터 운영비/ 보조공학기기 관련 운영비/ 특수교육 보조인력 인건비/ 종일반 및 방과후 운영비는 도교육청 재배정사업비로 운영 예정)

부록1. 2023 성남 특수교육 운영계획 반영사항 정리

가. 모든 학교에서 반영할 주요 내용

대상	추진과제	추진내용
유,초,중,고 학생	장애이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장애이해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-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실시 계획 반영 - 학교교육과정 반영 연간 2시간 이상 확보
유,초,중,고,특 교직원	장애인식개선교육	◆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(연간 2시간) 실시
모든 학교 (유치원포함)	장애인편의시설 설치	◆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장애인편의시설 중 의무시설 설치
	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칙(신설)	◆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
모든 초,중,고	장애학생 평가지침 마련	◆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 조정 포함

나.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에서 반영할 주요 내용

대상	추진과제	추진내용	비고
특수 교육 대상 학생	개별화 교육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(개인별) ◆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(개인별) ◆ 관리자, 통합교사, 특수교사, 보호자,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 관련 구성원의 공유와 협력 ◆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결과 보호자 통지 ◆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지원 계획 반드시 포함(신설) 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2조
	인권교육 성교육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◆ 성교육 매학기 1회 이상 실시(통합학급 포함 20시간 확보) 	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자료 참고
	특수교육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료지원, 상담지원, 가족지원, 보조인력제공, 보조공학 기기대여, 통학비 지원 ◆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과후교실 운영, 방과후자유수강권(꿈e든카드) 이용, 종일반 운영, 늘해랑학교 운영 ◆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	해당사업별 세부계획 확인하여 누락없이 지원
학교	통합교육 지원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반드시 포함 ◆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교육 관련 연수 누계 60시간 이상 이수 	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1조 참조
	안전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장애학생 등·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◆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◆ 학교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실시 	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7조

부록 2023 특수학교 현황

구분	학교명	구분	과정별 학급수					주소
			유치원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전공과	
특수학교 (2교)	성남혜은학교	공립	1(순회1)	12	8	8	8	희망로 518번길 8
	성은학교	공립	0	14	8	8	8	돌마로 866

2 2023 특수학급 편성 현황

과정	학교명	구분	학급수	주소	학교명	구분	학급수	주소
유 (17 학급)	단남초병설유	특수	1	광명로 300번길 25	성남푸른유	특수	2	수정로 233
	도촌유	특수	1	도촌남로 22-1	신백현초병설유	특수	1	판교역로 14번길 42
	백현초병설유	특수	1	백현로 144번길 26	오리초병설유	특수	1	미금로 121
	복정초병설유	특수	1	성남대로 1480번길 25	위례새초롱유	특수	1	위례순환로4길 2
	산운유	특수	1	판교원로 117번길 11	위례하늘유	특수	2	위례동이로 14
	삼평유	특수	1	동판교로 221	은솔유	특수	1	위례서일로 1길 24
	성남여수유	특수	2	여수울로 37	고등나래유	특수	1	청계산로2길 34
				판교반디유	특수	1	판교대장로5길 57-9	
초 (77 학급)	구미초	특수	1	미금로22번길 25	성남은행초	특수	1	순환로 447번길 11
	검단초	특수	3	원터로 25	성남정자초	특수	1	분당수서로 442
	금빛초	특수	2	남문로 112	성남제일초	특수	1	광명로 184번길 23
	금상초	특수	1	금상로 97	성남초	특수	3	수정로 233
	낙생초	특수	3	서판교로 74번길 11	성남화랑초	특수	2	동판교로 77번길
	단남초	특수	2	광명로 300번길 25	성수초	특수	1	모란로 11
	단대초	특수	3	단대로 30	수진초	특수	2	탄리로 95번길 16
	대원초(휴교)	특수	0	희망로 343번길 24	신백현초	특수	2	판교역로 14번길 42
	대일초	특수	2	금상로 58번길 22	야탑초	특수	1	양현로 400
	대하초	특수	1	시민로 14	오리초	특수	1	미금로 121
	도촌초	특수	1	도촌남로 99	왕남초	특수	1	대왕판교로 959번길48
	돌마초	특수	1	야탑로 96-7	운중초	특수	1	운중로 45번길 8
	백현초	특수	1	백현로 144번길 26	위례고운초	특수	1	위례순화로 155
	보평초	특수	2	동판교로 154	위례푸른초	특수	1	위례순화로 205
	복정초	특수	1	성남대로1480번길25	위례한빛초	특수	1	위례동로 55
	분당초	특수	1	중앙공원로32번길 20	위례중앙초	특수	2	위례순화로 71
	불곡초	특수	1	무지개로 129	장안초	특수	1	장안로 51번길 10
	산운초	특수	1	판교로 117번길 11	중부초	특수	1	자혜로 55
	상대원초	특수	1	순환로 214번길 16	중원초	특수	2	사기막골로 31번길 46
	상원초	특수	2	은행로 6	중탑초	특수	1	별말로 68
	상탑초	특수	2	판교로 647		순회	1	
	성남동초	특수	2	자혜로 32번길 10	청솔초	특수	1	금곡로 243
	성남북초	특수	2	희망로 534번길 3		순회	1	
	성남서초	특수	1	태평로 19	탄천초	특수	1	내정로 20
	성남미금초	특수	1	미금로 151	하원초	특수	1	광명로 396
	성남송현초	특수	1	동판교로 258	하탑초	특수	2	양현로 262
	성남수정초	특수	2	제일로 123번길 9	한솔초	특수	1	돌마로 303
	성남양지초	특수	1	논골로 36번길 33	희망대초	특수	1	공원로 370번길 29
	성남여수초	특수	1	여수울로 37	안말초	특수	1	양현로 104

과정	학교명	구분	학급수	주소	학교명	구분	학급수	주소
중 (36 학급)	금광중	특수	1	황송로 25	늘푸른중	특수	1	정자일로77
	낙원중	특수	1	서판교로132번길 11	성남여중	특수	1	공원로 446
	도촌중	특수	1	도촌북로 50	수진중	특수	2	모란로 55
	보평중	특수	1	동판교로 131	신백현중	특수	1	판교역로50번길 19
	백현중	특수	1	황새울로 124	야탑중	특수	1	양현로 442
	분당중	특수	1	황새울로 4	영성중	특수	2	둔촌대로 248번길 7
	불곡중	특수	1	금곡로 139	운중중	특수	1	운중로 96
	삼평중	특수	1	대왕판교로 644번길 77	위례한빛중	특수	1	위례동로 85
	셋별중	특수	2	불정로 288	은행중	특수	1	순환로 379번길 20
	서현중	특수	1	중앙공원로 54-1	정자중	특수	1	황새울로 60
					창성중	특수	1	수정로 386
	성남동중	특수	2	광명로 361번길 23	청솔중	특수	1	금곡로 283
		순회	0		태평중	특수	1	제일로 293
	성남문원중	특수	1	논골로 79	판교중	특수	1	판교원로 193
					하탑중	특수	2	별말로 11
	성남서중	특수	2	희망로 496	동광중(사립)	특수	1	원터로 84
순회		1						
고 (33 학급)	돌마고	특수	2	이매로 105	성남테크노 과학고	특수	4	둔촌대로 258번길 7
	보평고	특수	1	동판교로 124	성남고	특수	2	시민로 61
	복정고	특수	1	복정안골로 35	성남여고	특수	2	원터로 94번길 6
	분당경영고	특수	1	금곡로 289	수내고	특수	1	발이봉북로 15
	분당고	특수	1	내정로 165번길 31	운중고	특수	1	운중로 95
	분당중앙고	특수	1	불정로 174	이매고	특수	0	탄천로 1
	불곡고	특수	1	금곡로 149	한솔고	특수	1	내정로 70
		순회	1		위례한빛고	특수	2	위례대로 86
	판교고	특수	1	동판교로 257	동광고(사립)	특수	1	원터로 84
	성남금융고	특수	1	장미로 153	성보경영고(사립)	특수	1	논골로 82
전공과		2						